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5-145
----------	--------

2025. 12. 2.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가. 제출자 : 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

나. 제출일 : 2025. 11. 14.

다. 회부일 : 2025. 11. 18.

2. 제출이유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제출됨.

3. 주요내용

가. 인용 법명의 현행화 및 용어의 재정의(안 제2조)

나. 조문의 “항” 번호 삭제(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25. 10. 10. ~ 2025. 10. 30.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시행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임.
- 그동안 근거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자치법규의 최신성 및 정확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의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제1호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의를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법령 인용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쟁점사항 없음.
- 제2호는 “사업지구” 정의 개정에 있어서 상위법령은 2019년 12월 10일 개정을 통해 기존의 “사업지구” 용어를 “지적재조사지구”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한 지정·고시 구역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타 법령상의 “사업지구”와의 용어 혼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에서도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사업지구”를 “지적 재조사지구”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함.
- 현행 일부개정조례안이 여전히 구(舊)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은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일치 사례로 판단됨.
- 안 제13조 “①”항 번호를 삭제하는 개정은 해당 조문 내용이 단일 규정으로 간단명료하여 별도의 항 구분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법기술상 자연스러운 정비로서 이견 없음.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은 타당함.
-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상위법은 2019년 개정을 통해 타 법령과의 용어 혼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구”를 “지적 재조사지구”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에는 이 용어 변경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제2조제2호 정의조항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용어는 조례 전반(제5조, 제14조 등)에서도 반복 사용되고 있어 제2조만을 개정할 경우 조문 간 용어 불일치와 조례 전체의 문언·체계상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상위법 인용 조항의 정확성에도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의회는 수정의결 절차를 통해 안건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으나, 수정의결은 제출된 안건의 목적이나 성격을 변경

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됨. 금번 지적사항은 조례의 다른 조문들과 체계적으로 연동된 용어 정비로서 단순 문언 수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수정의결로 처리하기에 법적·기술적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후 집행부가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조례 전체의 용어체계와 문언을 일괄 정비하여 새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관 계 법 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 사업을 말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중략)

-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